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

개요

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함

사업대상

대상기관 |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복막투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

대 상 자 |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(질병코드:#N18.5)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

교육상담료

내용	기준	수가
•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**의사가** 환자에게 일반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**전문적·심층적 교육상담** 제공 시 산정 • 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상담료 I의 경우 **투석 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산정 가능**	• 의사가 1인의 환자를 **1대1로 회당 최소 15분 이상**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**1일 1회 이내**로 **초기년도 연 4회 이내, 차기 년도부터 연 2회 이내**로 산정 가능하며,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. • 교육상담료 I 산정 시 **초기년도 연 4회 이내에는 투석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산정횟수 연 2회 이내를 포함**한다. •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해당분야 전문의(세부전문의 포함)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한다.	**39,950원*** (본인부담 10%)

수가코드	적용일자	분류번호	한글명	병원급이상단가
IB510	2021.01.01	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료	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-교육상담료	39,950
IB511	2021.01.01	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료	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-교육상담료-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	39,950

*2021년 기준

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정보시스템

시스템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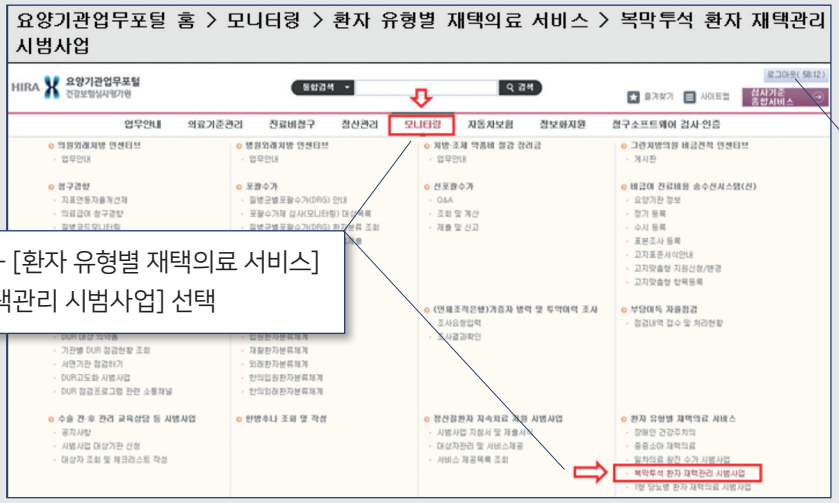

가. 요양기관업무포털 (HTTPS://BIZ.HIRA.OR.KR)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

나. 상단 [모니터링] - [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] - [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] 선택

교육상담료 | 점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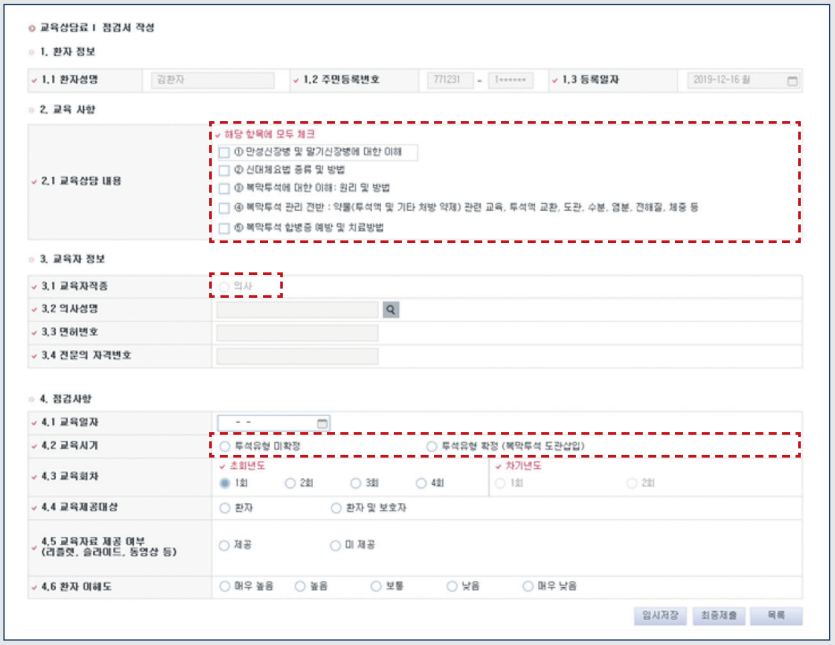

Q&A

Q1 교육상담료의 초기년도, 차기년도 기준은?

환자별 시범사업 참여일*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* [별지 제6호 서식]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(환자용) 작성일

예) 2020년 3월 6일 시범사업 참여한 환자의 경우

구분	초기년도	차기년도
일자	2020.3.6 ~ 2021.3.5.	2021.3.6 ~ 2022.3.5.

Q2 교육상담료I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분야 전문의(세부 전문의 포함)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를 말하며, 시범기관 소속여부는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]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(변경)신고서, 상, 신고된 의사에 한하여 시행 가능합니다.

Q3 입원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I, 교육상담료II 수가산정이 가능한가요?

동 수가는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이므로 입원환자에게는 수가산정이 불가합니다.

REF.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- 917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
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

KO-RC55-21001(220221231)